

직원보수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(신설)	<u>부 칙</u> 1.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이전의 부장, 차장, 과장, 과장급대우, 대리 직급은 각각 직원인사규정 제5조 제1항의 2급, 3급, 4급, 5급, 6급을 의미한다.	직급명칭 개선반영